

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3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4. 12. 1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수정하고, 사업대상지 제외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역세권 범위를 최대 350m로 완화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함(안 제2조제1호가목).
- 사업대상지 제외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).
- 역세권의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,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(부칙 안 제3조).

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“단,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.”로 단서를 신설한다.

안 제4조제2항을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”로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역세권”이란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인 지역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략)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4조(사업대상지) 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에 위치하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----- . 단,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2. ~ 6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사업대상지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제정안과 같음)</p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호 등을 위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 단, 주거환경 정비 및 역세권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제8조 각 호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함할 수 있다.

1. 성곽 주변 등 역사, 문화, 장소,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

2. 전용주거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따른 결정·처분·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역세권 범위에 대한 적용례)
제2조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범위 적용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350미터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(제정안과 같음)

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(제정안과 같음)

<삭 제>